

중간검사 준비사항(제55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제1종 중간검사

가. 선체에 관한 준비

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, 카목(선체 외부로 한정한다), 거목의 준비를 할 것

나. 기관에 관한 준비

1) 주기관

가) 내연기관

(1)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

(2)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쥔 수 있도록 할 것. 다만,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3)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,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

(4)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

2) 프로펠러축계

가)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

나)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

다)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쥔 수 있도록 할 것

라)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,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

마)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

3) 보일러

가)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,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,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

나)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

다)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, 판과 관의 두께를 쥔 수 있도록 할 것

4) 발전기(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한다)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)의 준비를 할 것

5) 보기 및 관장치

가)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

나) 연료유탱크, 여과기, 밸브, 콕,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

6)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

7)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

8) 1) 및 4)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. 다만,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다.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

별표 8 제3호의 준비를 할 것

라. 조타,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

닻, 닻 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

마.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

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

바.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

1)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

2)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
사.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

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
아. 냉동,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

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
자.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

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

차.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

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
2. 제2종 중간검사

가. 수밀문·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

나. 기관, 배수설비, 조타설비, 구멍 및 소방설비, 거주 및 위생설비, 항해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

다. 전기설비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